

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

제정 2022. 1. 6 의회규칙 제39호
일부개정 2025. 7. 18 의회규칙 제5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대리)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결원, 출장, 휴가 그 밖에 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한다. <개정 2025. 7. 18>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(이하 “국장”이라 한다)이 대리한다.

②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관이 대리한다. <신설 2025. 7. 18>

③ 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. <신설 2025. 7. 18>

제3조(지정대리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5. 7. 18>

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7. 18>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

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

하는 책임을 진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 「용인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
에 따라 대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5. 7. 18 의회규칙 제5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직무대리 명령서

1. 피대리자의 직위와 성명:
2. 직무대리자의 직위와 성명 :
3. 직무대리 기간 :

위와 같이 직무대리를 명함.

년 월 일

직 성명 (서명 또는 인)